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4일, 이정현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2. 25.)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8.)

상정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5. 12. 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

12. 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이정헌의원)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적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하여 범죄예방 효과가 미약한 측면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및 불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가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개정안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어떠한 정보가 권리침해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하고, 권리를 침해받은 자의 의사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사업자가 이를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이에 현행 제44조의2는 권리침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는 현재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직접적인 삭제 요청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선제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
- 또한, 사업자가 임의로 권리침해정보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삭제 등 조치하는 경우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개정안의 조치를 규정하기에 앞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 현)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